

kiri Weekly

2011.7.11 제139호

이슈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포커스

중국 부동산시장 거품 논란

금융보험 해설

개인연금의 이해(2): 개인연금의 다양한 종류

국내금융 뉴스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물가불안과 마이너스 실질임금 증가율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경기회복 속도, 대공황 이후 가장 부진

유럽 _ 유럽 보험회사, 미래 경제충격 대부분 감내 예상

일본 _ 금융청,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규제 일부 완화

중국 _ 손해보험회사 지급보험금 급증 불구,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집중

_ 올 상반기 중국 보험사업 실적 부진과 원인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연구위원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질적 활성화를 통해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퇴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다수의 기업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개인은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수급권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적립금 수준을 검증하며, 퇴직연금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시 일정 기간 퇴직연금시장에의 재진입을 금지함.
- 퇴직급여제도를 비롯한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허용하였으며, 이직 시 해당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함.
-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영인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자동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함.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퇴직연금시장 질서를 확립함.

■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퇴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폭 확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재무건전성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근퇴법 개정안은 그동안 퇴직연금가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 하지만 근퇴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행공백기로 인해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바람직함.

- 법 시행 이전에 적립금 중간정산이 급증하여 노후소득재원이 소진되고,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음.
- 인프라 구축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의 제한적 허용,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하위법령 또는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유예조치와 관련 없이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 역시 제도상 문제점이 많이 드러남.

-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제도의 유연성 부족으로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됨.
- 노후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적립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미흡했으며, 잦은 중간정산을 통해 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함.
- 그동안 근로자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에 따라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이 존재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모집업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근퇴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며, 퇴직연금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경제주체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근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제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근퇴법 개정안 내용을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 강화, 수급권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 퇴직급여제도 및 적립금의 유연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 강화, 시장거래질서 확립 면에서 살펴봄.
- 이후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제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 근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 강화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이하 ‘복수사용자제도’라 함)를 도입함.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운용관리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업 위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가입은 미진한 실정임.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7.8%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6.3%에 불과함.

〈표 1〉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2011년 4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56,001	30,016	13,492	3,436	536	611	104,092
(B)전체 사업장수	1,204,919	157,952	47,529	9,460	1,330	1,071	1,422,261
도입비율(A/B, %)	4.6	19.0	28.4	36.3	40.3	57.0	7.3

자료 : 고용노동부(2011. 5), 퇴직연금 도입현황

-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 유도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대표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다수기업이 함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함.

〈표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복수사용자제도 도입

법안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

- 그동안 한 기업 내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하였지만, 근로자 개인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어느 하나에만 가입할 수밖에 없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개정된 법안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표 3〉 근로자의 복수 퇴직연금제도 설정 허용

법안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내용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 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권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최소적립금 수준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함.

- 그동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의 적정 여부를 사용자 등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됨.
- 앞으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최소적립금 하회 시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해소하고,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래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며, 150% 초과 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표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

법안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내용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주 : 개정안 제16조 1항은 개정 이전 법안 12조 5항과 동일함.

■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마련, 계약이전 및 제도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 가입자를 보호함.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사업 중단 시 가입자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퇴직연금가입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취소(3년) 또는 등록말소(2년) 시에는 퇴직연금시장 재진입을 제한함.

〈표 5〉 퇴직연금사업 등록취소 및 말소 이후 시장 재진입 제한

법안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다. 퇴직급여제도 및 적립금의 연속성 강화

■ 적립금의 중산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가입자의 선택권을 감안하여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담보대출을 도입함.

-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허용되어 노후에 사용되어야 할 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었음.
- 개정안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적립금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기타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 중 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표 6〉 중도대출 제한적 허용

법안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대신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여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함.

〈표 7〉 담보대출 제한적 허용

법안	제7조(수급권의 보호)
내용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이직 시 적립금을 통산하여 은퇴시기까지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이직 시 적립금을 55세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함으로써 노후재원이 중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함.

〈표 8〉 적립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급여제도 활용

법안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내용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 적립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급여제도 활용에 대한 제7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참고함.

라.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자원 마련 기능 강화

■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м.

- 우리나라는 자영인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우리나라 자영인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취업근로자 대비 32.8%로 OECD국가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에 이름.
- 근퇴법 개정안은 자영인이 원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인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표 9〉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제도가입 허용

법안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의 2항
내용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조노력을 통한 부담금 납입으로 추가적 노후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표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추가적립

법안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의 2항
내용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 도입을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 자동설정을 의무화함.

- 그동안 중간정산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어려운 퇴직금제도를 신규사업장에까지 자동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됨.
- 또한 신규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가입률이 저조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신규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 도입을 제한하고, 설립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자동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또한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함.
 -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노사협의 절차가 엄격하였음.

〈표 11〉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

법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내용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함)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마. 시장거래질서 확립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기존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모집업무에 대해 특별규정이 없었으나, 유권해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서 모집업무 수행이 가능함.
-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모집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을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표 12〉 모집업무 위탁

법안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함)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이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주 : 퇴직연금의 모집업무 위탁에 대한 제3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참고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 운영 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표 13〉 금융거래정보 요청

법안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함)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 현황에 관한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제37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참고함.

■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시장거래질서를 확고히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대신 책임지는 등의 특별이익 제공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함.

〈표 14〉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지

법안	제32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의 4항
내용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주 :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제37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참고함.

3. 제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제반 영향

■ 이번 근로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폭이 확대되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즉,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으며, 둘 이상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적립금 중간정산의 원칙적 금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능력 강화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 및 수급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연금재원의 확보가 가능해지고, 적립금 수준의 수시검증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보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 특수형태근무자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임.

나. 정책적 시사점

- 근퇴법 개정안이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이라는 시행 공백기가 발생하여 법개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근퇴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도의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전에라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시스템적 인프라(퇴직연금 모집인 위탁제도 등)와 거의 관련성이 없는 중간정산 금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유예조치와 관련 없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 이유는 법시행 이전 기업의 급격한 중간정산으로 연금재원이 소진될 우려가 있고,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또한, 근퇴법 개정 이후에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강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연금세제혜택 부여와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의 연금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적립금 규제방식을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투자상품 선택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kiri](#).